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26. 7. 29.>

(　　)사업 [] 휴　　업, [] 폐업 [] 운항중단, [] 재개 신고서

※ [　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　3일

신고인	상호(명칭)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 소 (전화번호:　　)	
신고사항	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	
	영업구역	
	선박명세	
	휴업·폐업·운항중단·영업재개 예정일	
	휴업·운항중단 기간	
	사 유	
	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미제출 사유(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)	

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신고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관할관청의 장　　귀하

처 리 절 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신고 수리
신고인		시·도, 시·군·구, 지방해양경찰청,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·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		시·도, 시·군·구, 지방해양경찰청,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·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		시·도, 시·군·구, 지방해양경찰청,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·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		

유 의 사 항

폐업한 후에도 면허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「형법」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